

러시아 통신산업 현황

1. 통신산업 현황

□ 구소 시절 투자부진으로 서방에 비해 크게 낙후

- 구소 시절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통신설비의 디지털화가 지연되었고, 통신밀도(teledensity) 면에서 100명당 22회선으로 선진국의 평균 40회선, 미국의 63회선에 크게 못 미침
- 1995년 국내 원거리통화의 5%만이 정상적으로 연결

□ 민영화를 계기로 투자 증가, 신장 가속화 전망

- 1992년부터 국내외 원거리 통신사업자인 Rostelekom과 89개 지역·지방 통신사업자, 그리고 정부보유지분 관리업체인 Svyazinvest 등 러시아 통신산업 주도 업체들에 대해 경매 및 유통시장 매매 등을 통해 근로자 또는 민간 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들에게 지분 매각, 민영화 추진
- 1993~1998년 사이 투자증가로 케이블 및 통신망 중계회선이 27,800Km, 18,300Km 각각 연장되고, 국내 원거리 및 국제전화 접속능력도 481,000 채널 증가되었으며, 1997년까지 통신설비의 디지털화도 15% 진행
- 2001년중 통신시장은 30% 이상 신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역 셀방식 통신망 확대, 인터넷 및 정보유통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향후 4~5년간 지속되어 2004년에는 시장규모가 80억~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무선통신, 이동통신부문이 성장 견인 전망

- 셀방식(cellular) 통신서비스 가입자수가 2001년 초 3.4백만명에서 동년 말 7.8백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1996년 0.2백만명 대비 39배 수준
 - 셀방식 통신망은 전국 89개 지역중 73개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음
- 이동통신서비스 보급율은 국가 전체적으로 1999년 1% 수준이었으나, 수도인 모스크바의 경우 2010년까지 67%에 달할 전망이며, 시베리아 지역도 2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추세
 - 모스크바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MTS, Vimpelcom, Megafon 등임
 - MTS는 Deutsche Telecom and Sistema가 대주주인 러시아 이동통신부문 최대 사업자로 2001년 3/4분기 중 총수익 138백만 달러, 53%의 순수익율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초에는 지역 이동통신사업자인 Kuban GSM의 최대지분을 취득, 지역으로 사업확장을 추진중임
 - Vimpelcom도 2001년 3/4분기 중 총수익 41백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역시 서비스망의 지방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Megafon은 2001년 말 현재 91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 3개 회사는 향후 3년간 지역 통신망 구축 및 기술 개선 등에 총 18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시장경쟁 가속화 추세

- 러시아 정부가 통신시장을 지배하고 있긴 하나, 100개 국영 및 3,000개 민간 통신회사의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가 Transtelekom, Gazprom^{o] Gaz-Svyaz}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통신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국영전력회사인 UES도 새로이 참여

- 민간 통신회사들의 통신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1994년에 3%에서 2001년에 25%로 증가

2. 주요 사업환경

관련 기관

- o 통신정보부(Ministr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통신부)
 - 1999년 설립되어 통신산업에 대한 감독, 통신설비의 기술요건 부여·확인, 사업허가 등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보유
 - 산하기관으로 라디오주파수위원회(State Commission for Radio Frequencies), 전자통신정보위원회(State Commission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라디오주파수청(State Radio Frequencies Service) 등을 둠
 - 라디오주파수위원회는 Resolution No.346에 따라 주파수 범위 배분
 - 라디오주파수청은 주파수 범위 내에서의 채널 할당, 기술력 부합여부 감독
- o 확인국(Department of Certification)
 - 통신부 내부 기관으로 통신설비 수입시 사전확인업무 수행
 - 확인업무와 관련해서는 통신법 16조, Russian Federation Law On Certific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1993), Rules for Conducting Certific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러시아표준위원회 2000년 제정) 등과 Regulations on the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for the Interconnected Communications Networks of the Russian Federation(2001, Certification Rules) 등 통신부 규칙 적용

- Certification Rules은 세부적인 확인절차 · 시기, 구체적 확인기관, 필요 서류, 확인의 연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확인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신부 산하 항소위원회(Appellate Commission)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13조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음)
 - o 이 외에 통신감독청(State Service for Supervision fo Communications Activities : Gossvyaznadzor)은 사업허가 등록업무와 허가된 사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 수행
- 관련 법규
- o 통신법(Federal Law No. 15-FZ "On Communications")
 - 통신산업 관련 기본법으로 통신사업자의 권리, 감독기관, 통신설비에 대한 확인, 통신망의 외국인소유 허용, 통신 사생활 보호, 필요시 통신사용자에 대한 손실 보장 등에 관해 규정
 -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통신망 구축권한,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소유권한, 민영화계획에 대한 참여 권한, 내국기업과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권한 등에 관해 규정
 - o 경쟁법(Competition Law, 1991)
 - 기본적으로 시장진입장벽 구축, 특정인에 대한 구매거절 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음
 - 특정 회사가 6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경우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최소 35% 이상인 경우에 여타 여건을 감안하여 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

- 경쟁에 관한 주무부처인 러연방 반독점 및 기업지원부(Ministry of Anti-Monopoly Policy and Support for Entrepreneurial Activities : MAP)는 통신부문에 대한 자연독점기업을 관리
- 통신부문 자연독점기업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절차는 MAP Regulations on the Register of Natural Monopoli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No.1184(2002)에 명시
- MAP Regulations은, 고객들이 해당 통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통신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회사를 자연독점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독점기업 포함 및 제외여부는 MAP가 공표
 - Rostelekom, MGTS, Central Telegraph 등과 지방의 Elektrosvyaz 등 약 185개 업체가 자연독점기업으로 분류
- 한편, MAP는 자연독점법(Law on Natural Monopolies)에 따라 자연독점기업 통신서비스요금 결정 등 자연독점과 관련한 폭넓은 권한 보유

□ 사업허가절차

- o 모든 통신사업자는 통신법 15조에 따라 통신부 허가를 받아야 함
 - 1994년 제정된 Resolution No.642에 따라 서비스형태 · 지역을 명시하여 허가되며, 허가기간은 3~10년임
 - 허가시 기술개발, 서비스의 개시 · 종료 시한, 관련 통신망 확대 및 지방 공중전화망(PSTN) 개발 의무 등이 부여
 - 허가는 양도불가능하며,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합병,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회사의 법적형태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허가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한편, 2002년 4월 말 현재 통신서비스 사업허가건수는 11,500건이며, 98%가 민간기업인 것으로 알려짐

□ 통신요금제도

○ 사용자에 따른 차등 적용

-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데 반해, 기업체에게는 이보다 훨씬 비싼 요금 적용. 일반 거주용 주택의 설치비는 120달러에서 1,000달러 범위

○ 자연독점기업의 통신서비스 요금

- 2001년 10월부터 Resolution No.715에 따라 결정되며, MAP가 자연독점 기업과 관련한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

○ 국제통화요금

- Rostelekom이 통신부로부터 국제통화요금 결정권한을 10년간 위임받은 상태임

- 그러나 Sovintel, Combellga 등 민간 사업자들과의 경쟁격화로 2001년 7월 모스크바, 세인트 피터스버그 등지로부터 EU 및 미국으로의 통화 요금을 20% 인하하는 등 결정권한 위임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음

- Rostelekom, Sovintel 등은 2001년 6월 collect call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Rostelekom은 Guta Bank와 제휴하여 요금지급카드를 도입, 카드로 요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들에게는 10% 할인혜택을 부여

○ 국내통화요금

- 통신부는 2000년 국내통화에 대해 통화시간기준 요금체계를 새로이 도입

- 2001년 말 현재 카잔, 크拉斯노야르스크 등 200개 이상 도시에서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통화 사용자의 10%가 이를 이용
→ 일반 거주자 전화이용자들은 상업용 이용자들보다 30%정도 요금 인하 효과

o 통신망 연결

- 현행 통신법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통신망 및 설비를 정부가 정한 조건 또는 통신사업 허가시 부여된 조건으로 러시아내 모든 통신망에 연결가능토록 하고 있음
- 연결규칙(Rules for interconnection, 1996)에 따라 통신망을 연결코자 하는 사업자는 상대 통신망 사업자에게 연결신청을 하고 기술적 조건, 이용요금 등에 합의하는 경우 연결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연결규칙은, 통신망 연결신청을 받은 통신사업자가 기술력 부족, 통신망의 불법 또는 국가안보를 해칠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별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신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3.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제도개혁 전망

□ 외국인투자 규제 및 현황

- o 외국인의 TV방송사 지분 소유한도 50% 제한 이 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

- 통신부는 "Draft Concept for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 Market"을 통해 외국인의 통신부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러시아의 WTO가입 문제와 관련해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6~1998년 중 15억 달러에 달한 이후 1998년 금융위기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1년에는 총투자가 21억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외국인투자도 8.1억 달러에 달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주요 외국인투자 사례로는 2000년 미국의 Metromedia Int'l의 Comstar-Telecommunications 지분 50% 매입(60백만 달러), Alfa Capital 주도 컨소시움의 Golden Telecom 지분 50% 매입(125백만 달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 미국의 Motorola, Cisco Systems, Lucent Technologies, Golden Telecom and Corning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통신시장에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제도개혁 전망

- 통신부문의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고, WTO가입요건에 부응하는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사업허가 및 확인 절차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며, 특히, 시장 발전과 허가제도 합리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통신부는 2000년 마련한 2010년까지의 통신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동기간중 33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o 한편, 러시아 하원인 두마(Duma)는 현재 통신법 개정안을 검토중인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허가절차의 간소화

- 허가신청요건, 제출서류, 불허 근거, 허가연장 및 절차, 허가 종료 등을 명시하는 등 허가절차의 세부화, 간소화

② 주파수 할당

- 주파수 할당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파수 할당 거부 사유와 이에 대한 법정검토를 요청할 권리 등을 명시

③ 통신망 연결

- 현행 통신법 및 규칙은 통신망 연결에 관한 표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일부 주요 사업자가 통신망 연결을 거절하거나 자회사 등에 비해 높은 요금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통신부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 통신시장을 25% 이상 점유하거나, 최소한 25%를 점유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사업자를 중요한 시장지위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자는 여타 통신망과의 연결조건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자체 지점이나 자회사 등과의 연결조건보다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함

- 이 외에 국내 원거리 · 국제 유선통신 요금체계, 반독점 관련 조치, 최소 서비스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통신부 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조항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① 통신부의 감독기능 지속

- 통신법 개정안이 주로 유럽관행에 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부의 감독기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지적임

②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49% 이하 제한

- 유선통신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동통신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지분이 대부분 이를 이미 초과하고 있고 또한 이 부문이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통신부의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자본 참여에 대한 일체 규제 철폐 언급 등과는 크게 상치된다는 지적임